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2024. 12.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요약)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 추진 배경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 지속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감소 추진

□ 성과 분석

- 기초학력 진단-보정, 학교맞춤선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 지원 확대
- 경기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지원 활성화
- 교원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 내실화

□ 추진 방향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 추진 내용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진단 강화	정책과제 1 기초학력 진단-보정 강화	1-1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1-2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1-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
보정 내실화	정책과제 2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운영	2-1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 2-2 자율성·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강화
기반 구축·운영	정책과제 3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	3-1 기초학력 집중주간 운영 3-2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강화 3-3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 기대효과

-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인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 강화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도모
- 학교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지원하는 다중학습안전망 운영으로 기초 학력 보장 사업 내실화 및 기초학력 부진 해소
- 학습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공교육 책무성 제고

□ 2025 달라지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2024년 진단	2025년 변경 · 강화
기초 학력 진단 및 관리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검사 및 향상도검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력 3R 5 학년초 진단 학년별 도달도 진단 기초학력(교과) 학년초 진단, 3차 향상도 검사 [초3,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도 검사 이력 관리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관리	학습지원 대상학생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지원대상 선정 시 학부모 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동의 여부에 따른 학습지원교육 불참 학습지원대상학생 관리 어려움
기초 학력 3단계 안전망	1단계 [수업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맞춤선택제 시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 학습지원튜터 학습도약계절학기 시범 운영
	2단계 [학교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림학교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강화 복합요인 학생 집중 지원 확대
	3단계 [학교밖]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진단-학습코칭-집중 지원 읽기 곤란 학생 지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기초 학력 맞춤 지원 체제 강화	현장 맞춤형 지원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력 교원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단위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자문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학습지원 인력 역량 강화 연수 학습지원 담당교원 연수 지원
	경기 기초학력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기초학력 정책 연구 및 정책 제안 교육공동체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 연수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근거	1
II. 2024년 주요성과 및 분석	2
III. 시사점 및 정책 추진 방향	5
IV.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	7
V. 세부 추진 계획	8
1. 기초학력 보장 진단-보정 강화	8
2.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운영	14
3.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지원	18
VI. 기대 효과	23
※ 부록	24
1.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개요	24
2.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역할 및 일정	26
3. 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28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I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 학생 개인의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학력의 중요성 강조
- 지속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으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 감소 추진
 - 초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추이 소폭 감소, 중학생 ·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증가 추세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 추진 강화 필요

[표 1] 최근 3년간 3R's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학년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체
	초(3~6학년)	중(1~3학년)	고(1학년)	
2022	1.77	1.86	2.13	1.92
2023	1.66	2.48	1.92	2.02
2024	1.65	2.59	1.93	2.06

□ 추진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기초학력보장법 (법률 제18458호, 2022.3.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
- 국정과제 82-3. 기초학력 보장 지원
- 제1차 2023~2027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8065호, 2024. 5. 16., 제정)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8223호, 2024. 10. 14., 제정)

□ 2024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주요성과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 진단-보정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콘텐츠 및 리플릿 배포(1월)
 - 진단-보정 내실화를 위한 지역별 강사요원 연수(2월)
 - 기초학력 진단검사·향상도 검사(3월~12월, 초3~고2) 및 보정 지원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책임교육학년(초3, 중1) 진단 정교화
 - 학교맞춤선택제 컨설팅 (5월~10월, 25개 교육지원청, 초·중·고 2,513교)
 -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 (수업 안)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565교 운영
 - (학교 안) 두드림학교 1,509교, 학습지원튜터 226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2,248교 운영
 - (학교 밖)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1:1 맞춤형 상담 1,833명, 특수요인 진단지원 1,035명, 찾아가는 기초학력 멘토링 98회, 5~11월)
 -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10월, 25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 116개 프로그램)
 - 2025 기초학력 보장 정책 사업 도움자료 개발(12월)
-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지원
 - 경계선지능 학생 지도 워킹그룹 운영 및 연수(108명, 9월~10월)
 - 읽기곤란(난독증) 학생 지원(초등 673명, 진단 및 학습 바우처 지원)
 - 찾아가는 1:1 맞춤학습상담 운영(초·중·고, 4,473명)
 -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초·중·고 1,685교)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가정 연계 학부모 연수 운영(6월, 초등 학부모 535명, 9월 중등 학부모 500명)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포럼 운영(10월)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성과공유회 운영(12월)
- 교원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원 역량 강화
 - 기초학력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선도교원 워크숍(4월)
 - 기초학력 전문교사 양성 직무연수(심화, 전문가, 7월~10월)

□ 현장 의견 분석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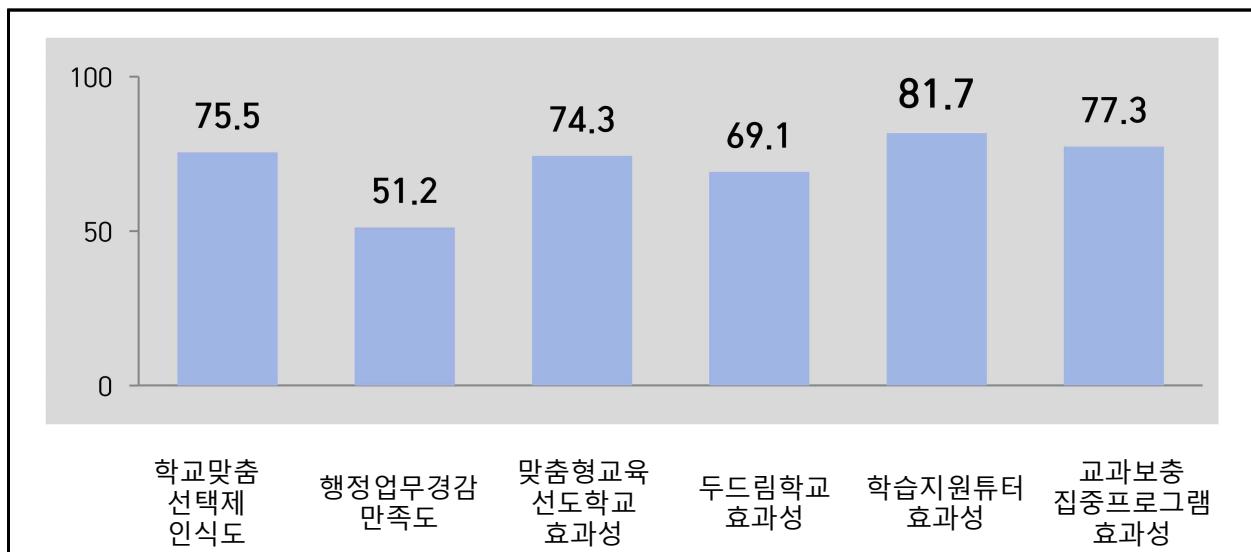
[표 2] 2024년 경기교육 정기여론조사

[5점척도, ()는 순위]

구분	설문대상 정책수	응답수	인지도	실행도	효과도	중요도	요구도 (보리치 요구도 분석)
학생	9	8,000	3.52 (6)	3.68 (3)	3.59 (4)	3.72 (6)	0.15 (8)
학부모	14	1,548	3.30 (8)	3.05 (10)	2.94 (11)	3.24 (10)	0.61 (9)
교원	20	2,153	3.96 (2)	3.42 (7)	3.22 (10)	3.50 (11)	0.28 (14)

- 2024년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하여 학생(9개 정책 중 6위)과 학부모(14개 정책 중 8위)의 인지도가 중위권인 데 반해, 교원의 인지도는 2위로 나타남. 세부 모니터링 결과,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정책으로 적기에 학습결손 예방 및 대처 등 기초학력 보장 정책 취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공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교육공동체 대상 기초학력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 실행도와 효과도와 관련하여 학생은 각각 3위와 4위, 학부모는 실행도 10위, 효과도 11위, 교원은 실행도 7위, 효과도 10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부 모니터링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기초학력 보장 사업 운영을 통해 학습 수준 향상을 확인했고, 중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학생의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학교 부적응 예방 및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함. 그러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의무적 참여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하여 기초학력 업무 담당 교사의 행정 간소화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계속성 측면 세부 모니터링 결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기초학력 보장 사업 간 중복성 개선, 기초학력 부진 학생별 부진 원인에 따른 심층적 지원 요구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 보장 예산 확보 노력 다각화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내실화가 필요함.

○ 기초학력 보장 지원 ‘학교맞춤선택제’ 만족도



* [설문조사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문기간] 2024.10.22~11.8., [참여자] 초·중·고 교사 1,596명

- 교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교맞춤선택제 관련 만족도 설문 결과, 학교맞춤선택제 사업 중 학습지원튜터 효과성을 81.7%로 가장 높게 응답함.
- 학교맞춤선택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감을 도모했으나 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가 51.2%로, 현장이 체감하는 업무 경감 방안 모색이 필요함.

III

사사점 및 정책 추진 방향

□ 2024년 기초학력 지원사업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표 3] 2024년 시도교육청 지원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보고서 기반 시사점 도출

항목	지표	운영 결과	시사점
교육 인력 지정 · 배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구성 인력 (지도+행정) 유형별 비율	기초학습지원센터 행정인력 담당장학사 1명 담당주무관 1명 행정업무전담 봉사직 1명	○ 기초학습지원센터 구성 인력 유형별 비율의 2024년 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구성 인력 중 정규인력과 공무직(무기)의 적절한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학습 지원	정규수업 중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수업모델 (협력수업, 분리형 개별 맞춤 지도(풀아웃, Pull-out) 등) 적용 학교 비율	1수업 2강사제 지원 협력수업 운영 학급수 대비 분리지도 (풀아웃) 운영학급 비율 [초] 0.78% [중] 1.42% [고] 2.24%	○ 정규수업 중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학습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업모델 적용 비율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두드림학교 사업 운영 학교 비율	두드림학교 운영학교 1509교 [초] 983교 [중] 363교 [고] 163교	○ 전년도 대비 두드림학교 사업 참여학교 비율이 전 학교급에서 향상되었으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참여학교 확대 방안이 필요함.
사업 실적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비율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 [초] 31.61% [중] 26.01% [고] 26.82%	○ 2024년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급별 참여 비율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기초 학력 향상 정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참여 전·후 학생 변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프로그램 학생 참여 이후 전체적으로 향상도 인식 정도가 낮아져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기초학습지원센터 참여 이후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향상 측면에서 전년에 비해 저조한 경향을 보임. 학습종합클리닉의 운영 효과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책 추진 방향

-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 증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보정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 학습이력 관리 강화
-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중학습안전망 재구조화 추진
 - 수업 안 다중학습안전망 내실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 중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 활성화
 - 학교 안 다중학습안전망 체계화를 위하여 두드림학교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 두드림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차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 컨설팅 강화
 - 학교 밖 다중학습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특수요인 보유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으로 교육소외에 따른 학습 격차 해소 지원

□ 추진체계

비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목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2025
중점
추진**

- 에듀테크 활용 체계적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원
-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진단 정교화
-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책무성·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추진 과제

영역

핵심과제

세부과제

**1
진단강화**

**기초학력
진단·보정 강화**

- 1-1**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1-2**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 1-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

**2
보정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운영**

- 2-1**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
- 2-2** 자율성·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강화

**3
기반
구축·운영**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지원**

- 3-1** 기초학력 집중주간 운영
- 3-2**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강화
- 3-3**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정책과제 1 기초학력 진단 · 보정 강화

1-1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 구성 · 운영 초·중·고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관리하여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책무성 실현
- 시기: 2025. 3. (매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성)
- 대상: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 내용
 - 단위학교 상황을 반영한 기초학력 진단 사항 협의
 - 기초학력 진단 결과 기반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지원 방안 마련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이력관리 방안 마련
 -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정 활동 운영 관리 등
- 방법
 - 구성: 위원장(학교장)·부위원장(1인) 포함 8인 내외, 간사(학습지원 담당교원)
 - 횟수: 학기별 1회(학년 초, 학년 말) 이상 개최하되, 학생 학적 이동 등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 추가 선정 필요시 추가 개최

□ 단위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 목적: 학습지원교육 운영 업무 담당자 지정을 통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 시기: 2025. 3.
- 대상: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 역할: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 운영,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참여 체계적 관리 등
- 방법: 학습지원교원 업무 수행을 위한 수업시수 및 업무분장 등 근무여건 배려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추진 및 직무연수 이수

1-2 |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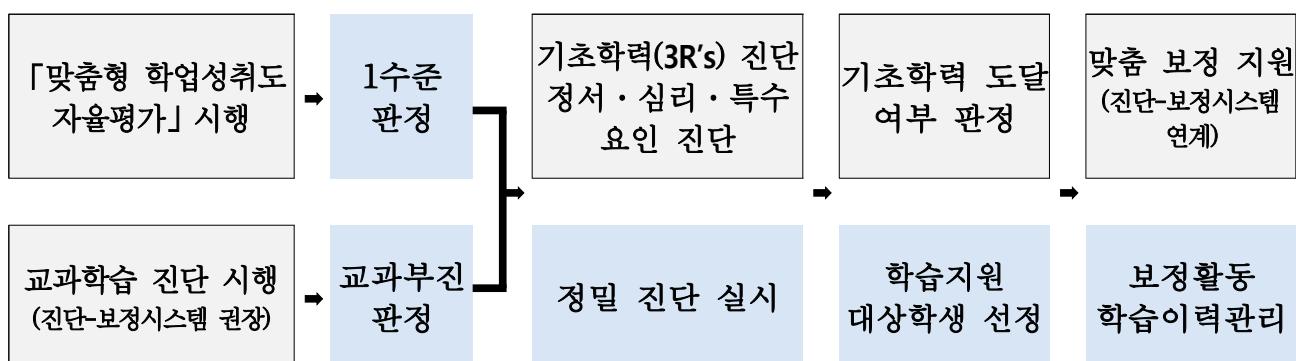
□ 기초학력 진단계획 수립 및 안내

- 목적: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계획 마련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시기: 2025. 3.
- 내용: 검사 과목·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진단계획 수립,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단계획 안내

□ 체계적·다층적인 기초학력 진단 실시 별도 공문 안내

- 목적: 학생의 출발점 진단 및 학습 부진 요인 확인을 위한 진단활동 실시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방법
 - 학교 실정에 맞는 진단도구를 선택, 진단하되, 경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 진단검사 적극 권장
 - 학생의 학습준비도 심층 진단을 위한 정서·심리·특수요인 추가 진단 활성화
 - 기초학력 진단 후 보정 내실화를 위한 진단 활동 결과 데이터 관리 철저(학습이력 관리 연계)
- 진단-보정 활동 흐름

[그림1] 기초학력 진단 활동 흐름도



○ 출발점 진단 활동

[표 4] 출발점 진단 활동

구분	출발점 진단
진단 영역	교과학습, 3R's
진단 시기	2025년 3월 *학년초 기초학년 진단주간 운영
진단 내용	[교과학습] 초 국어, 수학 필수, 중 고 국어, 수학, 영어 필수 [3R's] 초 중 고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대상	초1~고2
진단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시스템(https://basic.goe.go.kr) 권장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http://k-basics.org) 배·이·스캠프(http://www.plasedu.org) 학교 자체 개발 문항·방법([직업계고] 하이저프 활용 가능) [초1, 2] 한글 또박또박(http://www.ihangeul.kr/) ※ 초 2학년(3월), 초 1학년(11월)
※지필형 진단 도구 의무 활용	<p>★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최소한의 성취수준 도달 여부 진단 및 보정 시행(고2)</p>
2025년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한 기초학력 출발점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3]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3R's 진단 대체 가능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교과부진 진단 대체 가능 <p>※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경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으로 연계함에 대한 학부모 동의 필요</p>

○ 향상도 진단 및 도달도 진단 활동

[표 5] 향상도 진단, 도달도 진단 활동

구분	향상도 진단	도달도 진단
진단 영역	교과학습	3R's
진단 시기	2025년 6월, 9월, 12월	2025년 12월
진단 내용	초 국어, 수학 필수, 중 고 국어, 수학, 영어 필수	초 중 고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대상	초3~고2	
진단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시스템(https://basic.goe.go.kr) 권장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http://k-basics.org) 배·이·스캠프(http://www.plasedu.org) 학교 자체 개발 문항·방법([직업계고] 하이저프 활용 가능) 	
※지필형 진단 도구 의무 활용		

○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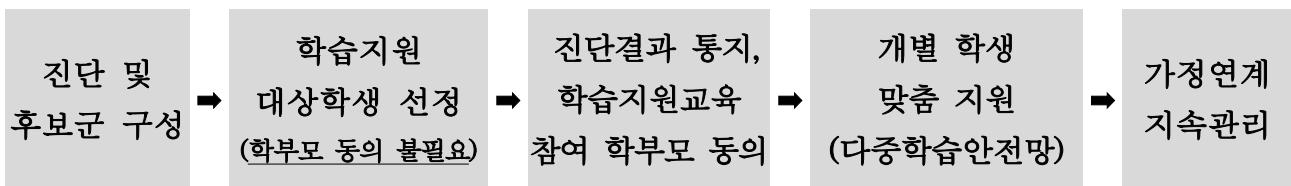
[표 6]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활동

진단 도구(지원처)	대상	검사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진단-보정시스템 https://basic.goe.go.kr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http://k-basics.org 	초	학습저해요인진단, 사회·정서역량검사, 학교생활적응도검사, 사회학습동기검사, 수학학습동기검사 등
	초 중	학습역량검사, 학습유형검사, 정서행동환경검사(EBEQ), 경계선지능 1차 체크리스트(초), 읽기학습 특성 체크리스트(초)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초 중 고	읽기·쓰기 검사 도구, 한글또박또박, 정서행동특성 검사도구 등
관찰 및 대면 진단	초 중 고	담임 및 교과교사 관찰, 면접, 상담 등

1-3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

▣ 중고

[그림2]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활동 흐름도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목적: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한 기초학습 부진 학생 체계적 지원 · 관리
- 시기: 2025. 3. * 학생 학적 이동 등 필요시 수시 선정
- 대상: 초 · 중 · 고 · 각종학교
- 방법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반영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후보군 구성
 - 학생의 학습준비도(인지, 심리·정서, 행동, 환경 등)의 구체적 파악을 위한 세부 검사도구* 선택, 진단
 - *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도구 등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
 - 다중학습안전망 연계 교내 지원방안 마련
 -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기관 연계 여부 결정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참여 과정과 학부모 동의

- 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의 판단에 의하므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에 학부모 동의 불필요
- ② 학습지원대상학생이 학습지원교육 참여 여부 결정시 학부모 동의 필요

※ 학습지원대상학생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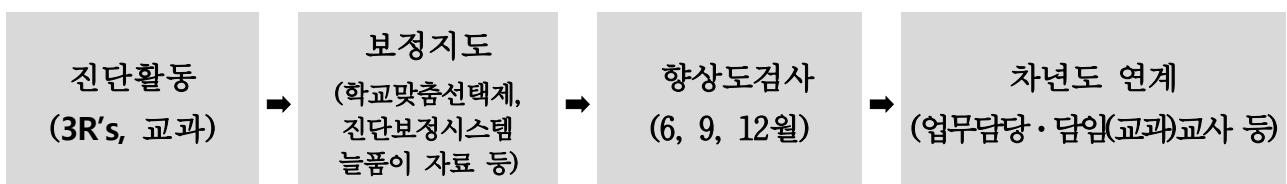
□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정 지도

- 목적: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부진 원인에 따른 맞춤 보정으로 기초학력 보장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시기: 2025. 3. ~ 2026. 2.
- 방법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 따른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수업 중 보조인력을 활용한 즉각적인 보충지도
 -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학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보정지도
 - 배·이·스 캠프 활용 보정지도 <https://www.plasedu.org/>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활용 보정지도 <http://k-basics.org>
 - 외부 기관 연계 지원: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난독증 지원 등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이력 관리

- 목적: ‘진단-보정-연계’에 이르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보정 지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로 기초학력 보장 실현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시기: 2025. 3. ~ 2026. 2.
- 방법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이력 책임관리
 - 기초학력 진단활동 결과 기반 학교맞춤선택제 참여 이력 통합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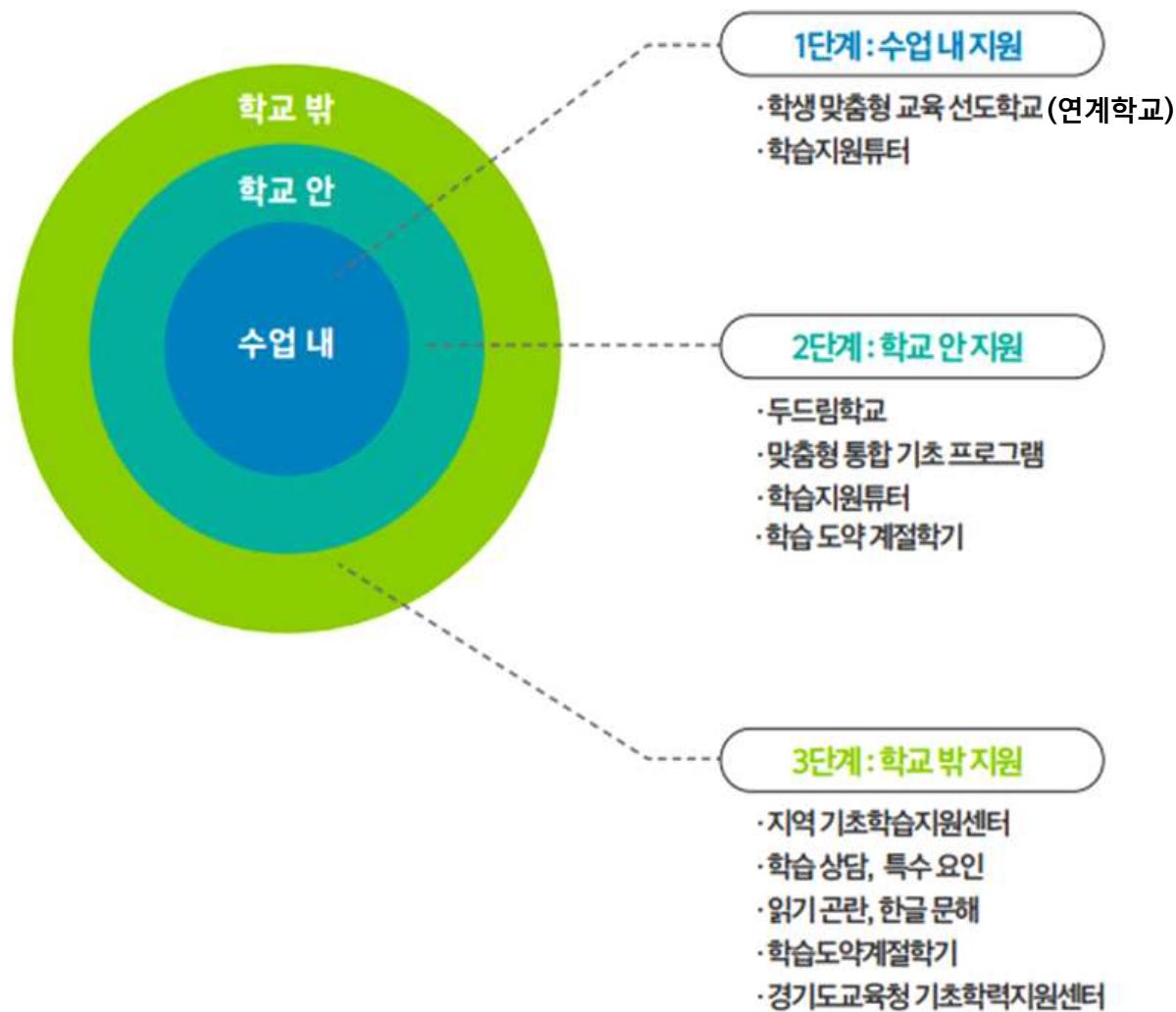
[그림3] 경기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학습이력 관리 흐름도



정책과제 2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안전망 구축 · 운영

2-1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

[그림4] 다중학습안전망 운영 체계도



□ [수업 안] 정규 교과 수업 내 기초학력 향상 지원 2025년 변경사항

- 지원사업: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학습지원 튜터
- 목적: 정규 교과 수업 시간 내 담임(교과)교사와의 협력 수업 또는 수업 보조로 학생 학습지원 및 피드백 제공

- 방법
 - 담임(교과)교사와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수업 지도 방법(협력 수업 또는 수업 중 개별 지도)과 학생 성장이력을 공유하고 수업 준비·자료 제작 등 협업
 -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집중 지원

※ 취약계층 기초학력 통합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연계학교】 연계

- ① 기초학력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와 교육복지우선사업 「연계학교」 연동 선정·지원
('연계학교' 선정 후, 선정결과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자동 선정)
- ②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및 긴급 복지 지원

□ [학교 안]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학습도약계절학기 등
- 목적: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상담·코칭·컨설팅·이력관리 등의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방법
 -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내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특수요인 진단, 의료 지원, 학생복지, 기초학력 지원 등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원인 요소 통합적 접근·지원

□ [학교 밖] 특수요인 전문 지원 강화

- 지원사업: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난독증 지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 학습도약계절학기 등
- 목적: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복합 요인 맞춤형 학습지도 및 심리 상담 지원
- 방법
 - 기초학력 심층 진단 결과 기반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및 경기 기초학력 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지원(학습상담, 한글 문해력 지도, 특수요인 (ADHD, 경계선 지능, 난독증 등) 진단 및 학습 컨설팅)

2-2 | 자율성 ·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강화 ▣ □ □

□ 학교맞춤선택제1) 운영 ▣ □ □

- 목적: 기초학력 보장 사업 통합 운영으로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
- 추진일정
 - 사업 신청: 2025. 3월 중순
 - 선정 안내: 2025. 4월
 - 운영 기간: 2025. 4월 ~ 2026. 2월
- 운영대상: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중 신청교
- 방법: 단위학교별 학년초 기초학력 진단활동 결과를 기반한 사업 신청, 예산배정, 정산, 결과 보고 간소화를 통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업무 경감
- 사업대상 **2025년 변경사항**
 -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두드림학교
 - 학습지원 튜터
 - 학습도약계절학기

□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별도 공문 안내 □ □

- 목적: ‘연계학교’ (교육복지우선사업)와 연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및 교육복지 통합 지원*
- * 교육복지우선사업 ‘연계학교’ (복지협력과) 선정교를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로 자동 지정, 학생 통합 지원 강화
- 협력 교과: ▣ 국어 · 수학, □ 국어 · 수학 · 영어
-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200교 예정
- 예산: 교당 1,300만원 내외(연계학교 예산 300만원,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예산 1,000만원 내외)
- 방법: 학습지원대상학생 수업 내 협력강사 투입, 맞춤형 수업 설계 ·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즉각 지원

1) 학교맞춤선택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학습도약계절학기 중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배정, 정산, 결과보고 간소화를 통해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경기 기초학력 보장 정책

□ 두드림학교 별도 공문 안내 초·중·고

- 목적: 단위학교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교 2,500교 예정 2025년 변경사항
- 예산: 교당 200~400만원 내외
- 방법
 - 학생 종합지원을 위한 두드림팀 구축 · 운영(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통합 운영 가능)
 - 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 부진요인 진단, 학습코칭, 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구입비, 지원바우처, 협의회비 등 예산 운영

□ 학습지원 튜터 별도 공문 안내 초·중·고

- 목적: 학습지원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및 튜터링을 통한 학습결손 요인 맞춤 관리
- 대상: 초·중·고등학교 1,000교 예정
- 예산: 교당 1,000만원 내외
- 방법
 -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진단 결과 결손을 입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 방과 후 · 방학 중 학습지원을 위한 인력*(튜터) 예산 지원
* 수업 안, 학교 안 선택 신청
 -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을 포함한 정규수업 · 방과 후 · 방학 중 학습지원 강사비 및 운영비 지원

□ 학습도약계절학기 별도 공문 안내 초·중·고

- 목적: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학습결손 보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희망을 고려한 방학 중 맞춤형 학습 지원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700교 예정
- 예산: 교당 500만원 내외
- 방법: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을 포함한 맞춤형 교과(보충) 지도 및 학습컨설팅, 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 집중기간 운영

3-1 | 기초학력 집중주간 운영

별도 공문 안내

 □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2025년 변경사항

- 목적: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연계하는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시기: 2025. 7월 ~ 8월
- 내용 및 방법
 - 교육공동체의 기초학력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 연수, 포럼, 강연, 사례 나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25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기획
 - 현장 기반의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연계하는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 역할
 - 도교육청: 지역별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프로그램을 반영한 총괄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관련 영역별 포럼, 강연, 연수, 사례 나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및 단위학교 안내
 - 단위학교: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 집중주간에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 심리 · 정서 · 사회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2 |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²⁾ 운영 강화

별도 공문 안내

□ 지역 기반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활성화

- 목적: 다양한 특수요인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학교별 학생 상황, 특성, 수준 등에 맞는 통합 지원
- 대상: 25개 기초학습지원센터
- 기간: 2025. 3월 ~ 12월(10개월) *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 자율적 운영
- 내용 및 방법
 -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
 - 특수요인을 가진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력·연계 및 지역 기반 학습지원시스템에 연계, 추수 관리
 - *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교육지원청이 계획 및 운영
 - 인력활용: 학습상담지원단(비상근 위촉직), 경기 기초학력 교육 네트워크, 바우처기관 상담사 등
- 역할: 학습지원대상학생 심층 진단 및 지원
 - 인지적·비인지적 학습부진요인 진단을 위한 표준화 검사 및 분석
 - 학생 개인별 맞춤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관리(일지 및 포트폴리오 관리, 교사 및 학부모 상담)
 -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프로그램 적극 도입·활용
 - ADHD·읽기 곤란(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전문적 진단 및 학습지원 확대
- 프로그램
 - 찾아가는 맞춤 학습상담프로그램 운영(학습(3R's)+학습전략+정서·행동 진단 및 상담)
 - 여름, 겨울방학 활용 한글해득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 캠프
 -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학습 프로그램 지원
 - 경계선 지능·읽기 곤란(난독증)·ADHD 학생 등
 - * 단위학교에서 1차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도교육청·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로 의뢰
 - 지역 및 대학 연계, AI 프로그램 활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2)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기존의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한 센터

*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로 명칭 전환하여 운영

□ 지역 기초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목적: 지역 단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류를 통한 지역 기초학력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 중 기초학력 전문가 과정 이수 교사, 수석교사, 연구년제 교사 등
- 시기: 2025. 4월 ~ 12월
- 방법
 - 지역 내 학습지원 전문기관 발굴(진단 및 치료 가능 병원 및 바우처 기관)
 - 지역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연 2회 이상)

□ 지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목적: 지역 단위 교육공동체 기초학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상담사 등
- 시기: 2025. 4월 ~ 12월
- 내용 및 방법
 - 교원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
 -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연수 강화 및 홍보 확대
 - 읽기 곤란(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교원, 바우처기관 상담사 등)
 - 학습상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3-3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³⁾ 운영

□ 경기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

- 목적: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 기초학력 보장 정책 연구, 체계적인 기초학력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경기도 교육청 기초학력 사업 성과 관리
- 운영 기간: 2025. 3월 ~ 2026. 2월 ※ 운영 기간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운영 방법: 지정위탁
- 역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지정 사항

역할	추진 내용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추진 과제 내실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 지원, 예방 및 기반 영역 핵심 과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기초학력 보장 정책 포럼 및 홍보
경기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안전망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교육청 다중학습안전망 운영 방안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 내, 학교 안,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학교맞춤선택제 지원 사업 체계 현장 적합도 제고
학습지원 담당교원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력 전문교원 양성 직무연수 ※ 읽기 곤란,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지원 방법 포함-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개선 연수○ 문해력, 수리력 지도사례 일반화 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관리 연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25개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주요 사업 성과관리- 기초학력 보장 사업 성과 공유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활용 학생 맞춤 학습지원 방안 연구○ 특수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방안 연구

- 기타: 정책연구 및 홍보, 기초학력 보장 포럼 등

3)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단체

□ 기초학력 보장 교원 전문성 강화 별도 공문 안내 ▣ ▣ ▣

- 목적: 교원의 기초학력 부진 지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해소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
- 기간: 2025. 3월 ~ 12월
- 연수과정: 「기초-심화-전문교사과정 직무연수」 운영
- 내용 및 방법
 - [기초]과정: 경기도교육연수원 원격직무연수 15시간 이수(3월~12월)
 - [심화]과정: 기초과정 이수 교원 중 신청 교원
 -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계
 - 신청 및 연수 과정 별도 안내(2025. 5월 예정)
 - [전문가]과정: 심화과정 이수 교원 중 신청 교원(초·중등 각 160명)
 - 신청 및 연수 과정 별도 안내(2025. 5월 예정)
 - 전문가 과정 이수교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교육지원청 연계 현장 지원 활성화

□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 별도 공문 안내 ▣ ▣ ▣

- 목적: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
- 대상: 단위학교 학습지원담당교원(학교당 1명 이상)
- 기간: 2025. 3월 ~ 12월
- 내용
 -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계 원격연수(15시간) 과정 이수
 - 이수 결과 제출(2025. 10월 말)

□ 경기 기초학력교육 네트워크 운영 지원 (초·중·고·특)

- 목적: 교원의 자발적 기초학력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기초학력 전문교사 양성 및 현장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 대상: 기초학력 교육 네트워크 회원
- 기간: 2025. 4월 ~ 12월
- 내용 및 방법
 - 구성: 10개 지역 연구회, 4개 분과(진단보정시스템, 학습장애, 에듀테크, 교구제작)
 - 네트워크-도교육청 간 소통·협업 활성화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 네트워크 분과별 연구·사례나눔 활동 지원
 - (네트워크)-(지역 연구회)-(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교육지원청) 연계·협업을 통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밀착 지원

VI

기대효과

-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인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 강화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도모
- 학교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지원하는 다중학습안전망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 사업 내실화 및 기초학력 부진 해소
- 학습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공교육 책무성 제고

부록

□ 경기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개요

정책 과제 및 실천 내용	성격			추진		
	진단 보정 지원	도 지역	초 중 고			
1. 기초학력 진단-보정 강화						
1-1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 ●			● ● ●		
1-2 기초학력 진단 정교화						
① 3R's, 교과학습 진단	●			● ● ●	● ● ●	
② 정서·심리·특수요인 진단	●			● ● ●	● ● ●	
③ 책임교육학년 기초학력 진단	●			● ● ●	● ● ●	
1-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지도 내실화						
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 ● ●	● ● ●	
②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정 지도						
• 단위학교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수업 중 보조인력 활용 즉각적인 보충지도 -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학습지원 튜터	● ● ●			● ● ●	● ● ●	
• 기초학력 학습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보정지도 - 기초학력 학습지원시스템	● ● ●			● ● ●	● ● ●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이력관리 - 배·이·스 캠프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활용	● ● ●			● ● ●	● ● ●	
• 외부 기관 연계 지원 -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난독증 지원	● ● ●			● ● ●	● ● ●	
③ 향상도검사(초3~고2)	● ●			● ● ●	● ● ●	
2.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안전망 구축·운영						
2-1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						
•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 ●			● ● ●	● ● ●	
2-2 자율성 주도성 기반 기초학력 보장 강화						
①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 ●			● ● ●	● ● ●	
② 두드림학교	● ● ●			● ● ●	● ● ●	

정책 과제 및 실천 내용	성격			추진		
	진단 보정 지원	도 지역	초 중 고			
③ 학습지원 튜터	● ● ●	● ●	● ● ●			
④ 학습도약계절학기	● ● ●	● ●	● ● ●			
3.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기반 구축·지원						
3-1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①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총괄 계획 수립	●	●				
② 지역 단위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계획 수립, 운영	● ●		●			
③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계획 수립, 운영	● ●		● ● ●			
3-2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강화						
① 지역 기반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 활성화						
• 복합 요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 ● ●		●			
- 학습: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 ● ●		●			
- 심리·정서: Wee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	● ● ●		●			
- 복지: 학생맞춤통합지원	● ● ●		●			
• 찾아가는 맞춤 학습상담프로그램 운영	● ● ●		●			
- 학습 + 학습전략 + 정서·행동 진단 및 상담	● ● ●		●			
• 방학 활용 한글해독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 캠프	● ● ●		●			
• 지역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학습 프로그램 지원	● ● ●		●			
: 경계선 지능·읽기 곤란(난독증)·ADHD 학생 등						
• 대학연계, AI 프로그램 활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 ●		●			
② 지역 기초학습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			
③ 지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		●			
3-3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① 경기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	●	●				
② 기초학력 보장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	● ●	● ● ●			
③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강화	●	● ●	● ● ●			
④ 경기 기초학력교육 네트워크 운영 지원	●	●				

□ [단위학교] 역할 및 일정

영역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반 예방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신청			⇒									
	이전년도 기초학력 관련 자료 인수 인계			⇒									
	학교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ID 비밀번호 인수 확인			⇒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개최			⇒	⇒	⇒	⇒	⇒	⇒	⇒	⇒	⇒	⇒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진단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연수 참여		⇒	⇒									
	학습지원담당교원 직무연수 이수(10월까지)		⇒	⇒	⇒	⇒	⇒	⇒	⇒	⇒	⇒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활용 교직원 연수 운영			⇒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			⇒									⇒
	진단 결과에 따른 학습지원대상 학생 선정(3~4월)			⇒	⇒								
보정	학습지원대상학생 학년초 인원보고(4월)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온라인정서검사 실시			⇒	⇒	⇒	⇒	⇒	⇒	⇒	⇒	⇒	⇒
	교내 개별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결정 및 지원				⇒	⇒	⇒	⇒	⇒	⇒	⇒	⇒	⇒
	읽기곤란 학생, 경계선지능 학생 체크리스트 검사				⇒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				⇒		⇒
환류	학습지원대상학생 추가 선정 및 지원 심의(사안 발생시)					⇒	⇒	⇒	⇒	⇒	⇒	⇒	⇒
	전문기관(의료·상담 기관, 기초학습지원센터 등) 심층진단 의뢰 여부 결정 및 지원 요청				⇒	⇒	⇒	⇒	⇒	⇒	⇒	⇒	⇒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	⇒				
	학기말 진단검사 결과 보고												⇒
	기초학력 보장 정책 만족도 조사 참여											⇒	
	기초학력 지원 사업 (학교맞춤선택제) 정산 및 결과 보고												⇒

□ [교육지원청] 역할 및 일정

영역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방 . 기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		⇒	⇒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안내		⇒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선정 안내				⇒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계획서 취합·관리				⇒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수 운영		⇒		⇒	⇒	⇒		⇒	⇒	⇒		
	학습지원 담당교원 협의회(네트워크) 운영				⇒	⇒	⇒		⇒	⇒	⇒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진단	기초학력 지역 연구회 운영·지원			⇒	⇒	⇒	⇒	⇒	⇒	⇒	⇒	⇒	⇒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			⇒									⇒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계획 취합·관리				⇒								
보정	단위학교 진단검사 결과 취합·관리			⇒									
	기초학력 지원사업 모니터링·컨설팅				⇒	⇒	⇒	⇒	⇒	⇒	⇒	⇒	⇒
	읽기곤란 학생, 경계선지능 학생 체크리스트 검사 안내				⇒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 지원					⇒				⇒		⇒	⇒
환류	전문기관(의료·상담 기관, 기초학습지원센터 등) 연계 지원				⇒	⇒	⇒	⇒	⇒	⇒	⇒	⇒	⇒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	⇒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사례 나눔									⇒	⇒	⇒	⇒
	기초학력 보장 성과 보고									⇒			
	기초학력 보장 유공 표창									⇒	⇒	⇒	⇒
	학기말 진단검사 결과 취합·보고												⇒ '26년 1월
	기초학력 지원 사업(학교맞춤선택제) 정산 및 결과 보고												⇒

□ [참고 자료] 진단-보정 활용 사이트 활용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https://basic.goe.go.kr>)

○ 진단검사 지원 내용

학교급	학년	교과(영역)	검사시간	검사지 유형
초등 학교	초 3학년	3R's(읽기, 쓰기, 셈하기)	각 영역별 40분	탄탄1, 탄탄2
	초 4학년~초 6학년	3R's(읽기, 쓰기, 셈하기)	각 영역별 40분	쑥쑥1, 쑥쑥2
	초 4학년~초 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각 교과별 40분	G형, H형
중학교	중 1학년~중 3학년	3R's(읽기, 쓰기, 수와 연산)	각 영역별 45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중 1학년~중 3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역사	각 교과별 45분	G형, H형
고등 학교	고 1학년	3R's(읽기, 쓰기, 수 이해와 활용)	각 영역별 50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고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각 교과별 50분	가형, 나형

※ 3R's의 경우, 2022년도부터 초등학교 3R's, 중학교 3R's, 고등학교 3R's로 구분되어 제공

※ 중·고등학교 3R's 쓰기 영역은 수행형 문항이 포함되어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진단보정시스템 로그인하기

구분	내용	비고
학교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 나이스 학교코드 10자리 ※ 예) J10000**** - 임시PW: 나이스 학교코드 10자리+25 ※ 예)J10000****25 - 임시PW로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 필수(개인정보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이스코드는 행정실에서 확인(J는 대문자) ◦ 비번 분실시 소속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담당장학사에게 초기화 요청
일반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계정으로 회원가입→ 학교관리자 승인 후 사용 가능 - 학교관리자도 교사계정 발급 후 학생관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번 분실 시 학교관리자에게 문의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 교사가 학생등록 후 자동 생성 - PW: 초기 비밀번호 (1111) → 변경 후 사용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 개별 ID와 비밀번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관리자 및 교사가 학생 비밀 번호 수정 가능
문의처	- 진단보정시스템 고객만족센터 1544-0079, 내선 4번 (KERIS)	

○ 활용법 연수자료(관리자용, 교사용, 3학년 담임용, 4~6학년 담임용, 교과전담교사용)

-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매뉴얼 배부(2025. 2월)
- 영상매뉴얼 활용( 경기교사온TV_초등)

○ 활용법 동영상 자료

강의 주제 및 URL	비고
1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해와 활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5cKW289yBhY	▶ 진단보정시스템 공지사항 강의자료(PDF) 탑재
2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콘텐츠 계열 및 구성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9ulpNr-YmUw	▶ 진단보정시스템 공지사항 강의자료(PDF) 탑재
3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9aJa_IqnUTE	▶ 진단보정시스템 공지사항 강의자료(PDF) 탑재
4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이해와 활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KZ6-HINBYmQ	▶ 진단보정시스템 공지사항 강의자료(PDF) 탑재
5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진단검사하는 방법(교사 및 학생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eReq4Kqzb_Q	▶ 관련문의 :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연락처: 042-821-8586 이메일:amec@cnu.ac.kr
6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진단검사하는 방법(교사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Yz9jrO6eETs	
7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진단검사하는 방법(학생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WQBCLI8KHQU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배·이·스 캠프] (<http://www.plasedu.org>)

○ 진단검사 지원 내용

학습관련 검사 실시 방법

1 • 별도의 개인정보 없이 회원가입(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유형: 학생/학부모/선생님)



2 • 각 학년별, 교과목별, 영역별, 학습 요소에서 문항 풀기, 보충학습·지도자료 제공(일부 학습 요소는 학습 동영상 포함)



3 • 내학습정보에서 그동안 풀었던 문항, 오답한 문항을 확인, 학습 후 재응시
• 출석 현황 파악 가능



※ 본 사이트에 있는 문항은 기출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보충학습·지도 자료 놀풀이에 있는 문항 중 한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항들로만 뽑아 구성한 것임

○ 활용법 연수자료

강의 주제 및 URL	비고
1. 자율진단-베이스 캠프 활용하기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KZ6-HINBYmQ • URL: https://youtu.be/KMDAZXeqpek	
2. 베이스캠프 온라인공부방 활용(교사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GBwpMnAlvhY	 경기교사온TV_초등
3. 베이스캠프 온라인공부방 활용(학생용) (동영상자료) • URL: https://youtu.be/8RQDUuqDFK8	

□ [참고 자료] 관련 법령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8호, 2021. 9. 24., 제정]



교육부(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747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4.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5.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 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8458호, 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정]

교육부(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747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나.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 다.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균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균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와 해당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활용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4.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 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 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 ③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제32554호, 2022. 3. 2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시행 2024. 10. 14.] [경기도조례 제8223호, 2024. 10. 14., 제정]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031-820-066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 내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학교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등의 수립)

-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습지원 담당교원 양성·연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환경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및 학교 교육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 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초학습지원센터)

-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초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계획
- 2.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 4.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제9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 2. 제5조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223호, 2024.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4. 5. 16.] [경기도조례 제8065호, 2024. 5. 16., 제정]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정책과), 031-820-06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경계선지능 학생의 맞춤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7. 교원과 학부모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교육 지원
 8.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065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경기도교육청고시 제 2022 - 519 호

고 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4호, 2022. 3. 25.)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2-519호 (2023. 1. 1.)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보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②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감(교감 미배치교는 교무부장)과 기초학력 업무 담당부장, 다음 각 호 중에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
2. 보건교사
3. 특수교사
4. 행정실장
5.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6. 교육복지 담당교사(또는 교육복지사)
7.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임무와 임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간사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학기별 1회(학년 초, 학년 말)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매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편입학·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협의회 회의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2.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계획
3. 그 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